

38. 보증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

주택사업공제조합 운영 003-21('99. 1. 11)

개 정 이 유

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(98.12.31)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의 개시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 변경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이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동세칙을 개정함

주 요 골 자

- 가. 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개시일로 함 (제75조)
- 나.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시 보증기간을 각각 1.2.3.5.10년의 5매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보증금액은 각각 전체보증금액의 20퍼센트.20퍼센트.30퍼센트.15퍼센트.15퍼센트로 함 (제76조의2제1항, 제2항)

보증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5조중 “사용검사일로부터”를 “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”로 한다.

제76조의2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별지서식보 제30-1호를 신설한다.

- ① 공동주택관리령 별표7의 의무하자보수책임기간에 따라 보증기간을 각각 1

년.2년.3년.5년.10년으로 구분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금액은 각각 100분의 20, 100분의 20, 100분의 30, 100분의 15, 100분의 15로 한다.

③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금액, 보증기간을 기

제한 내역서(별지서식 보제30-1호)를 보증서 뒤쪽에 첨부하고 지점장이 직인하여 보증서를 1장으로 발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. 1.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5조 보증기간 의무하자보수보증의 보증기간은 당해 주택의 <u>사용검사일로부터</u>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및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75조 보증기간 ----- ---<u>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</u>----- -----.</p>
<p>제76조의2 보증서 발급방법에 관한 특칙 ① <u>의무하자보수책임기간에 따라 내력구조부와 주요시설등으로 구분하여 보증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74조에 의한 보증금액의 80퍼센트를 주요시설등에 대한 보증금액으로 하고, 20퍼센트를 내력구조부의 보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내력구조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③ <u>제2항의 경우 보증신청서는 보증기간별로 각각 징구하여야 한다</u></p>	<p>제76조의2 보증서 발급방법에 관한 특칙 ① <u>공동주택관리령 별표7의 의무하자보수책임기간에 따라 보증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각각 1년, 2년, 3년, 5년, 10년으로 구분하여 보증서를 발급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금액은 각각 100분의 20, 100분의 20, 100분의 30, 100분의 15, 100분의 15로 한다.</u> ③ <u>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금액, 보증기간을 기제한 내역서(별지서식 보 제30-1호)를 보증서 뒤쪽에 첨부하고 지점장직인으로 각인하여 보증서를 1장으로 발급할 수 있다.</u></p>

[별첨]

별지서식 보 제30-1호(제76조의2 관련)

보증금내역서

일련번호 (주택)	보증금액	보증기간			의무하자보수기간
1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1년
2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2년
3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3년
4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5년
5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10년
일련번호 (상가)	보증금액	보증기간			의무하자보수기간
1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1년
2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2년
3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3년
4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5년
5		년	월	일부터 일까지	10년